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36
------------	-------

발의연월일 : 2018. 8. 29.

발의자 : 이수혁 · 윤관석 · 변재일
신창현 · 송갑석 · 우상호
안호영 · 강훈식 · 권칠승
박병석 · 김경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 ·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제22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일부장관 또는 편찬사업회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제23조(임원의 해임명령)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օ)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21조(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u><신 설></u>	<p>제22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일부장관 또는 편찬사업회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

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
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
나 기소되어 편찬사업회의 정
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가 없어진 경우

제23조(임원의 해임명령) 통일부
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신 설>

제21조 (생략)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 (현행 제21조와 같음)